

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4. 5. 9.(금) 10:00~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【 목 차 】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8	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
29	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
30	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6
31	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	9

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4. 3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5. 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5. 8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. 투자유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위촉내용을 신설함(안 제3조제3항)
 - (현행) 위원장 1명 : 군수
 - ⇒ (변경) 위원장 2명 : 군수, 민간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
- (2). 위원 중 의회의원 위촉 내용 삭제함(안 제3조제4항)
 - 「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」 제13조 관련하여 위원 중 군의원 위촉내용 삭제
- (3). 상위법 개정조문 및 중앙조직개편 내용 반영함
 - 지식경제부장관 ⇒ 산업통상부장관, 노동부령 ⇒ 고용노동부령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,
- 상위법 개정조문 및 중앙조직 개편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 하였으며,
-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 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4. 3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5. 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5. 8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‘주민등록번호’ 요구 서식을 ‘생년월일’로 대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. 별지서식의 용어 변경함(안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)
 - 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
- (2)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일부개정 하였으며,

-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4. 3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5. 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5. 8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제한을 완화,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(1).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함(안 제6조후단)

-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

(2).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)

- 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제1항 및 제3항, 제52조제1항
⇒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 및 제4항, 제54조제1항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5호 ⇒ 제3조제16호

- 매년 실시하는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부담을 완화함
- (3).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
 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 - 규정에 의하여(의한) ⇒ 에 따라(따른)
- (4).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(안 별표)
- (5)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제한을 완화 개선하며,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과, 「관광진흥법」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4. 3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5. 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5. 8.

2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폐지이유

- (1).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(과태료의 부과)에 명시되어 있으며, 그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면 되고,
- (2).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 환경부의 「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」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」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본 조례는 「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」로 제정(2004. 2.10.조례 제1704호) 시행되어 왔음.
- 나. 과태료 부과기준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0 조(과태료 부과) 별표 8 (2014. 2.11.개정)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고,
- 다. 환경부의 「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」이 폐지됨에 따라 당해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,
- 라. 「행정절차법」 제43조에 따라 2014. 3. 28. ~ 4.17.까지 20일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